

급경사지 현장지원단 구성·운영 계획

(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, 2022.05.16.)

□ 목적 및 내용

○ 급경사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속한 피해원인 조사 등 현장지원*

* 「급경사지법 시행령」 제15조의2(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) 제3호에 명시됨

○ 정부 및 지자체 급경사지 정비사업, 국가안전대진단, 계측 등 관련 업무 지원

□ 구성 및 운영기간

○ 운영주체 및 주관 :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

- 행정안전부 「재해경감대책협의회」 및 관계기관의 인력지원 요청 시 전문가 인력풀 지원

-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장이 1년 임기로 현장지원단 위촉·운영

○ 현장지원단(100명*) : 국내 관련 학회·협회 등에서 지반, 지질, 방재 등 급경사지 분야 전문가 추천을 통해 인력풀 구축

○ 운영기간 : '22.06. ~ '23.05.(급경사지 등 재해발생 시 수시로 운영)

<현장지원단 자격요건>

※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회원*으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자에 한함

- 급경사지 관련 분야 전공이수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
- 급경사지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- 급경사지 관련 분야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임·직원
- 급경사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
- 그 밖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행안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급경사지 등 지원분야 유일한 등록 기관으로 협의회 가동 시 현장지원단 활동을 위해 협회 회원 자격이 필요

붙임 : 급경사지 등 재해 발생 시 응소절차 1부. 끝.

붙임**급경사지 등 재해발생 시 응소절차**

1	행정안전부	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상황전파 * 대상자 :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* 내 용 : 급경사지 피해발생 관련 상황
---	-------	---



2	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	급경사지 피해 발생 시 상황접수(행정안전부 → 협회) * 내 용 : 피해발생 일시, 장소 및 피해경위 등
---	----------------	---



3	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	급경사지 피해 발생 시 응소유무 확인 요청 * 피해발생 권역 현장지원단 대상 문자전송 또는 유선 통화
---	----------------	---



4	현장지원단 (전문가)	급경사지 피해 현장 응소 가능자 보고(문자전송 / 유선통화) *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: 070-4195-0360 / 010-8624-2347
---	----------------	---



5	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	급경사지 현장지원단 파견계획 수립 및 통보 * 조사현장, 일시, 현장지원단 편성, 관계기관 협조사항 등 * 통보대상 : 행정안전부, 현장지원단(전문가), 관계기관 등
---	----------------	--